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엄태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95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20.

발의자 : 엄태영 · 조지연 · 박덕흠  
서천호 · 김재섭 · 강명구  
이만희 · 박성민 · 고동진  
박정하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경우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, 이후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%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,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활성화하고 인증받은 사업장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· 법인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의6).

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6제1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 
같은 조 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